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의 자격 구분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임신·출산 진료비용에 대한 추가급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타법 수급권자 자격구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타법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자격구분을 현행 일괄적 1종 부여 방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임신·출산 진료비용 관련 추가급여에 대한 위탁 근거(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임신·출산진료비는 보험공단에서 가장계좌 지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의 위탁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18. ~ 5.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1호가목 (1)부터 (6)까지를 제외한 부분 중 “다음 각 항목의”를 “다음의”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만으로”를 “사람만으로”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제3조제2항제2호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자”를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략)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로 한다.	② ----- ----- <u>사람으로</u> ---.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u>자만으로</u>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가. 다음의 ----- -- <u>사람 또는</u> ----- ----- ----- <u>사람만으로</u> ----- -----
(1) 18세 미만인 <u>자</u>	1) 18세 미만인 <u>사람</u>
(2) 65세 이상인 <u>자</u>	2) 65세 이상인 <u>사람</u>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u>호에 해당하는 자</u>	<u>에 해당하는 사람</u>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중인 자	6)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나. -----
다.·라. (생략)	----- 사람
다.·라. (현행과 같음)	다.·라. (현행과 같음)
2.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사람으로서 ----- 인정하는 사람
③ 2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 사람으로 ---.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현행	개정안
2. 삭제 <2009. 2. 6.>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2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사람으로서 -----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실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3091